<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2026-22>

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

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**부산동부지청 청년인턴 채용공고 (제2026-18호)**에 따른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25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

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모집 구분 (직종)	채용분야 (지원코드)	응시번호	성명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(청년인턴)	고용 (인턴01)	2026-02	윤○○
		2026-05	김○○
		2026-07	전○○
		2026-08	유○○
		2026-09	김○○
		2026-10	공○○
		2026-11	김○○
		2026-15	정○○
		2026-19	백○○
		2026-21	강○○
		2026-22	김○○
		2026-26	이○○

2 면접일시 및 장소

가. 면접일시: 2026. 3. 31.(화), 14:00~ * 면접시간 15분 전 대기실 입장

나. 면접장소: 부산동부지청 3층 소회의실

※ **대기실 : 부산동부지청 3층 통계조사실**

※ 부산시 금정구 공단서로12 (지하철 4호선 금사역 1번출구)

※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.

3 제출 서류

가.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 제출: 2026. 3. 25.(수) 10:00 ~ 2026. 3. 26.(목) 18:00

※ 제출방법: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 - [모집공고(면접)] 내 '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' 공고에 제출

*** 별지 2,3 서식은 자필 서명하여 스캔파일로 제출하고 원본은 면접 당일 제출**

나. 제출서류

○ **정책제안서**(별지1호, 필수 제출)

○ **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**(별지2호, 필수 제출)

○ **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**(별지3호, 필수 제출)

○ **우대요건(가점) 대상자**임을 확인할 수 있는 **증빙서류 1부**(해당자에 한함)

우대요건	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	증빙 서류(제출 서류)
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	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16조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9조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33조 『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20조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19조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7조의9	▫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(국가보훈처 발급)
사회형평가점 대상자(장애인)	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2조에 의한 장애인	▫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, 상이군경 회원증 등 사본(원본도 지참)
사회형평가점 대상자	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▫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	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▫ 한부모가족증명서
	『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보호대상자	▫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	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에 해당하는 자	▫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증명서(상세) 등

4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

○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소지**하여야 합니다.

※ 자격증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○ 면접시험 대상자는 **면접 시작 15분전까지 신분증과 공고시 안내한 제출서류를 지참**한 후 **지정된 장소에 도착**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○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○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면접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 ※ 별도 또는 추가면접은 없음

○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○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.

○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5 최종합격자 발표

○ 2026. 4. 2.(목)

-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, 나라일터(www.gojob.go.kr),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
* 문의처: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(☎051-559-6656)

<별지서식 제1호>

정책제안서

지원분야		성 명		연락처		e-mail	

제 목	ex) 청년이 보는 실업급여 정책 ※ *실업급여 정책 뿐만 아니라 고용분야 등 고용노동부 정책·사업·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*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○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
 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
 * 정책자료: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'2026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' 및 부산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내 센터에서 하는일 등 참고

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<별지서식 제2호>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□ 해당 □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. . .

성명 : (서명)
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귀하

<별지서식 제3호>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채용사유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**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**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**①에서 "예"에 답변한 경우**, **다른 법률에서**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**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"가족채용"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